

"걸어온 원자력 안전 30년, 걸어갈 국민 안심 30년"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수신자 수신자 제위

(경유)

제 목 음이온 작용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안내

1. 관련 :

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6299호) 시행(19.7.16)

2.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4. 개정·시행된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전리(電離)·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소위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하여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한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었으며, 해당 물질을 첨가한 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등 작용(소위 ‘음이온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5.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하여 음이온 효과·작용을 표시·광고한 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이에, 귀사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중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한 음이온 효과·작용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즉시 표시·광고를 중단하여 주시고, 해당 제품 및 제조업체 정보를 생활방사선 안전센터(1811-8336) 또는 전자우편(norad@kins.re.kr)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음이온 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안전 피해 및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음이온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며, 귀사에서도 부적합 제품 판매 및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령 위반 시 벌칙 안내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음이온 작용 등을 표시·광고한 자

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직원

07/21

이훈

실장

전결 07/22

채정석

협 조 자

시행 생활방사선측정평가실-5 (2020.07.22) 접수 ()
4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 19-0) <http://www.kins.re.kr>
전화 042-603-3105 /전송 / lh@kins.re.kr / 비공개(7)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